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384
----------	------

발의연월일 : 2017. 8. 4.

발의자 : 안호영 · 송기현 · 윤관석
정성호 · 표창원 · 박찬대
안규백 · 신창현 · 오제세
김상희 · 소병훈 · 양승조
의원 (12인)

제안이유

제2자물류, 제3자물류는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위탁하느냐, 특수관계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으로 구분되며, 국가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3자물류 시장 확대가 필수적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3자물류 활용비율은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한 수준이며, 우리나라는 화물운송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들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및 중소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인해 제3자물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1조원 이상 물류기업 대부분이 제2자물류 기업이며, 제2자물류 기업들은 모기업의 물류를 받아 중소물류

회사 또는 제3자물류 기업에게 재하청을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있으며, 외부물량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덤팡을 하는 등 공정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류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효율화·선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의2,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주요내용

가. 제2자물류를 화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다.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신설).

라. 제37조의2 또는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3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4 신설).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자물류”란 화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7조제1항 중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를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로, “강구하여야야”를 “수립·시행하고 지원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을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을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을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인수·확충하려는 경우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제1절에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37조의2(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류기업의 연간 매출규모 및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조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등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금지행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혐의 당사자에게 스스로 위반행위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의4(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에 따른 보고와 조사 결과를 통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7조의3을 위반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⑧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제2자물류 계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 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1.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인수·확충하려는 경우

2.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3. 그 밖에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삭 제>

보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2(제2자물류에 대한 사

업의 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류기업의 연간 매출규모 및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장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조사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 등을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3(보고 및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2 또는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불공정

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
업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
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
고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금지행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혐의 당사자에게 스스로 위반
행위를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4(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화
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공정거
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화주기업 또는 물
류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
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에 따른 보고와 조사 결과를 통하여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3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

-----.

-----.

<p>1. (생 략) <u><신 설></u></p> <p><u>2. ~ 4. (생 략)</u></p> <p>② (생 략) 제67조(과징금) ① ~ ③ (생 략) <u><신 설></u></p> <p>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별 칙) ① ~ ⑥ (생 략)</p> <p>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1. (현행과 같음) <u>2.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u></p> <p><u>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과징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p>법률 제14714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별 칙)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p>
--	--

<p>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2.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제37조의3을 위반하여 보고</u> <u>및 자료 제출요구에 따르지</u> <u>아니한 자</u></p> <p><u>(8) 제37조의2에 따른 사업정지</u> <u>처분을 위반하여 제2자물류 계</u> <u>약을 체결한 자는 3년 이하의</u> <u>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u> <u>금에 처한다.</u></p>
--	--